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4回平昌郡議會

第 1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5年 8月 4日(金) 11時15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第3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及議事日程決定의件
2. 第3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3. 平昌郡資源의節約斗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중改正條例案
4.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5.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案
6. 江原道教育委員候補者選出의件
7. 1995年度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報告의件
8.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1 面
2. 執行部幹部公務員新任人事 \_\_\_\_\_ 3 面
3. 第3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及議事日程決定의件 (議長提議) \_\_\_\_\_ 3 面
4. 第3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_\_\_\_\_ 4 面

5. 平昌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중 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	4 面
6.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平昌郡守提出) —————	6 面
7.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대한修正動議案 (禹康鎬議員發議) —————	8 面
8.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案 (平昌郡守提出) —	8 面
9. 江原道教育委員候補者選出의件 (議長提議) —————	13 面
10. '95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報告의件(劉燉文議員外3人發議)———	18 面
11. 休會의件 (議長提出) —————	20 面

(11時15分 開議)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공사간 바쁜일정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이번회기에는 제2대 강원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등 중요안건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숙의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報告事項

(11時16分)

○ 議事係長 咸京鎬 : 의사계장 함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 끝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2. 執行部幹部公務員新任人事

(11時17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김용욱군수로 부터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 平昌郡守 金容郁 : 금번 도인사및 군 자체의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직을 옮긴 군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수 전부군수는 지난 7월 29일자로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되었으며 후임으로 도 세정과장으로 계시다오신 박상만부군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박상만 부군수 인사 )

다음은 8월 1일 군자체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을 옮긴 새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송 기획실장을 소개합니다.

( 신대송 기획실장 인사 )

고창식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 고창식 문화공보실장 인사 )

이영덕 내무과장을 소개합니다.

( 이영덕 내무과장 인사 )

다음은 송재명 사회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 송재명 사회진흥과장 인사 )

권혁승 재무과장을 소개합니다.

( 권혁승 재무과장 인사 )

김민수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합니다.

( 김민수 환경보호과장 인사 )

강경석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 강경석 지역경제과장 인사 )

권순철 도시과장을 소개합니다.

( 권순철 도시과장 인사 )

김영주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 김영주 사회과장 인사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第3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期및議事

日程決定의件 (議長提議)

(11時18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199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  
니다.

< 參 照 >

. 議事日程  
( 끝에실음 )

4. 第34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11時18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2항 제34  
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경진의원과 유돈문의원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  
니다.

5. 平昌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  
法律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  
중改正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1時19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3항 평창  
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  
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敏洙 : 환경보호과장  
김민수 입니다.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 4월 8일자 재정된  
평창군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  
 례중에서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 관련업  
 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95년 2월 6일자로 상위법령인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별표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식품접객업소에 있  
 어서 종전에는 객석면적이 33㎡이상 이  
 던것을 객석과 객실면적이 33㎡이상으로  
 확대하고 집단 급식소의 경우 종전 160  
 ㎡이상이던것을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하는한편 적용대상도 이쑤시게를 식탁위  
 에 비치하지 않기, 그리고 합성수지코팅  
 된 1회용 광고 선전물등도 사용하지 않  
 도록 늘렸습니다.

둘째 숙박업소의 경우 종전에는 객실이  
 30실 이상이던것을 7실이상으로 확대 하  
 였으며,

셋째 판매업소의 경우 종전에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펍센터만 부과대상으  
 로 하던것을 매장면적 200㎡이상인 판매

점을 추가했고 그리고 합성수지로 코팅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경  
 우도 부과대상에 포함 되었으며  
 넷째 도시락 제조업체를 새로이 추가하  
 여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 억제하도  
 록 하였으며

다섯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  
 품 도소매업의 17개업종에 대하여 합성  
 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  
 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도  
 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  
 하여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  
 法律違反者에대한過怠料賦課徵收條例  
 중改正條例案

(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실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慶鎭 議員 : 이경진 의원입니다.  
주요골자 라항을 보면 도시락 사용업체  
를 새로이 추가하시고 합성수지로 제조  
된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을 억제하신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합성수  
지로 사용하는 도시락 업체가 관내에 상  
당히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체용기를 사  
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敏洙 : 지금 여기서  
개정하는것은 도시락 제조업에 대해서  
합성수지로된 1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  
하지 않는것으로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

이기 때문에 앞으로 1회용 도시락 용기  
가 개발이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대체용기에 대한것은 검토해 보  
지 못했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다른의원님들 토론이  
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  
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1時25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4항 평창

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지방재정계획수립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

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고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고 예산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 실음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구성원에 군수산하 과장11명이 위촉위원  
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평창군이 관광자  
원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될 부분인데 문  
화공보실장이 빠진것 같아서 11명을 12  
명으로 고쳐서 문화공보실장을 삼입했으  
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企劃室長 申大松 : 추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지금 질의하신 우강호  
의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동의를 하신것인  
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신것인지.....

○ 禹康鎬 議員 : 수정 동의안입니다.

7. 平昌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에 대한修正動議案(禹康鎬議員發議)

(11時30分)

○ 議長 金樂雲 : 방금 우강호 의원으로  
부터 위원에 문화공보실장을 추가로 하  
자는 수정동의를 있었습니다.

이동위에 재청 있으십니까?

( " 재청입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우강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동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우강호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  
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확인 )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중 전원이 찬성하  
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우강호의원이 동의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



用管理條例案 (平昌郡守提出)

(11時31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사회진흥과장 송재명입니다.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별도의 조례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의 성격이 유사하여 이를 폐지 통합제정하고 자금의규모를 확대하여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와 저

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의 통합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민소득지원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입니다.

세번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원대상범위의 확대입니다.

네번째 용자지원액의 상향조정입니다.

다섯번째 대부기간의 조정및 저리이자 신설입니다.

여섯번째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관리 체계 개편입니다.

일곱번째 상환유예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案

( 附錄에 실음 )

○ 議長 金樂雲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 끝에실음 )

질의나 토론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통합제정안은 체계적인 관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5조 2항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1번을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준하는 영세 상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분한테 행상이나 노점상에 대한 용어정의를 어디까지 해서 얼마큼 그분들께 혜택을 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안정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러니까 행상 용어

규정을 어떤장사를 하는사람까지를 행상인으로 보고 노점상은 어떤행위까지 노점상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요?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영세상이라고 하는것은 아직 자립기반이 안되어있고 자립기반을 구축할수 있는 이러한 가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영세상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 禹康鎬 議員 : 노점상은 .....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노점상은 길거리에서 장사하는것을 가지고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그럼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줄수 있습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시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 禹康鎬 議員 : 알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洙現 議員 : 그동안 용자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또 분석을 해보셨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지금까지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했고 그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세워가지고 사회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던 이러한 조례를 통합제정해가지고, 그래서 회계도 한가지 회계로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까지 용자를 해준것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용자를 해준것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이나 가구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소득금고로 지원해주는 것은 마을에 1,000만원씩 해주고 가구당은 200만원씩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특별지원사업은 1,0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해주는데 특별지원해준 마을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소득자금을 2,000만원까지 하고 마을로 줄수있는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 議長 金樂雲 :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되는 2개 특별회계 운영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지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규모를 모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지금현재 용자가 나가있는것이 약 7억정도 됩니다.

○ 禹康鎬 議員 : 통합 특별회계를 2개를 하는데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시거나오면 좀 그렇겠습니까?

그다음 통합전 2개특별회계 용자금 미상환액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미상환액이 얼마이고 왜 상환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이것은 소득  
금고인 경우에는 단기로 융자해줄 경우  
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입니다.

중기로 해줄때에는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이고 장기로 해줄때는 3년내지 5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되  
어서 지금 상황을 안하고 있는것이 6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기한이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받고 있는것이 대부분이고 기한  
이 도래가 되었어도 지금 상황이 안되고  
있는것은 약 2,700만원정도 됩니다.

○ 禹康鎬 議員 : 그 사유가 뭘니까?

○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 그것은 대부  
분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가보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거나 해서 살기가 어려  
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한테 저희들이 몇일전에도 보통  
마을이 1개마을이 있고 개인이 2명인데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달

내에 상황을 하겠다 하는 구두약속은 받  
았습니다.

○ 禹康鎬 議員 : 알았습니다.

○ 議長 金樂雲 : 다른 의원님 질의 없  
으십니까?

( 아무소리가 없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  
다.

그러면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  
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원휴식과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장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후 오후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時40分 停會)

(15時05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위원후보자선출을위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 江原道教育委員候補者選出의件  
(議長提議)

(15時05分)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선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강원도의회에 추천하게 되며 강원도의회에서는 추천된 2인중 1인을 경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방법은 동규정에 의거 먼저 경력자 1인을 선출한다음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2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 사이에서 이미 양해가 되어 선정된대로 지명하겠습니다 유돈문의원, 이수현의원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개표 상황을 감시하고 투표결과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분의원께서는 감표위원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및 투표함 점검 )

그러면 투표준비가 다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자 중에서 한분의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咸京鎬 : 의사계장 함경호

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시작하여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서는 측면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자 중에서 1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후에 바로

뒤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의원 "

" 이경진 의원 "

" 김두경 의원 "

" 우강호 의원 "

" 김종영 의원 "

다음은 김낙운 의장님의 투표는 의장석을 떠날수 없으므로 직원으로하여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의석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상득씨 교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투표를 모두 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하는이 있음 )

투표를 모두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및 점검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결과 8매로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및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해본결과 투표수도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집계후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에서 심승로등록자 2표  
전양수등록자 2표, 임세동등록자 2표,  
이한균등록자 2표로서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선출에 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등록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다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명폐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폐함및 투표함 점검 )

그러면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2차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조금전의 1차투표와 같습니  
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咸京鎬 : 호명하여 드리겠  
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의원 "

" 이경진 의원 "

" 김두경 의원 "

" 우강호 의원 "

" 김종영 의원 "

김낙운 의장님의 투표는 잠시전과 같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득씨 교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하는이 있음 )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  
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폐함을 열겠습니다.

( 명폐함 개함및 점검 )

지금 명폐수를 계산해본결과 8매로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및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해본결과 투표수도 8매로

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집계후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매중에서 심승로등록자 2표 이한균등록자 1표, 전양수등록자2표, 임세동등록자 3표로서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한 등록자가 없으므로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에 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앞서 10분간 정회한후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時35分 停會)

(13時45分 續開)

○ 議長 金樂雲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동규정에 의거 2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을 하신 임세동 등록자와 차점자이신 심승로, 전양수 등록자간의 결선투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 다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및 투표함 점검 )

그러면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투표에서 기표시는 조금전 호명한 임세동 등록자와 심승로, 전양수 등록자중 한분만을 기명하셔야 합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咸京鎬 :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의원 "

" 이경진 의원 "

" 김두경 의원 "



" 우강호 의원 "

" 김종영 의원 "

김낙운 의장님의 투표는 잠시전과 같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득씨 교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 하는이 있음 )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  
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폐함을 열겠습니다.

( 명폐함 개함및 점검 )

지금 명폐수를 계산해본결과 8매로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및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해본결과 투표수도 8매로  
서 명폐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집계후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매중에서 심승로등록자 2표,  
전양수등록자 1표, 임세동등록자 5표로  
서 강원도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5표를 얻은 임세동  
등록자가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1인에 대  
한 투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투표는 선출된 등록자를 제외한  
등록자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다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폐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폐함및 투표함 점검 )

그러면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투표  
를 시작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조금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咸京鎬 : 호명하여 드리겠  
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의원 "

" 이경진 의원 "

" 김두경 의원 "

" 우강호 의원 "

" 김종영 의원 "

김낙운 의장님의 투표는 잠시전과 같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상득씨 교부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회에서는 교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樂雲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했습니다 " 하는이 있음 )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및 점검 )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결과 8매로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및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해본결과 투표수도 8매로

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결과집계후 )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8매중에서 심승로등록자 2표, 이정인등록자 6표로서 강원도교육위원회 후보자 선출에 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이정인 등록자가 강원도교육위원회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위원회 후보자로 선출되신 두분계선 8월 23일 강원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경선을 거쳐 한분이 강원도교육위원으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0.1995年度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  
報告의件 (劉燮文議員外3人發議)

(16時17分)

○ 議長 金樂雲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보고 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의원을 대표하여 유돈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1995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휴회기간중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계획의 목적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을 중점으로 심도있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을 미연에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도출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촉구하며 '95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더욱 내실있고 군민을 위한 사업시행이 이루어 지도록 함은 물론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확인기간은 '95년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확인대상사업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실태 등 3건으로 하였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고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이 사무를 보조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및 방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參 照 >

. 1995年度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 ( 부록에 실음 )

아무쪼록 현지확인 기간중 무더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리라 예상되지만 금번 현지확인이 2대의회 개원후 최초의 현지확인 활동임을 특별히 감안하시어 당초 계획된대로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樂雲 : 지금 보고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그럼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16時12分 散會 )

11. 休會의件 (議長提議)

(16時10分)

○ 議長 金樂雲 : 의사일정 제8항 휴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시책추진실태 파악을 위하여 95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현지확인에 의원 여러분 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

○ 出席議員

議長	金樂雲
副議長	李相薰
議員	李慶鎭
議員	劉燉文
議員	李洙現
議員	金斗經
議員	禹康鎬
議員	金鍾永

○ 出席公務員

郡 守	金容郁
副 郡 守	朴商滿
保健醫療院長	李基魯
農村指導所長	劉載國
企劃室長	申大松
文化公報室長	高昶植

內務課長	李永德
社會振興課長	宋在明
財務課長	權赫昇
社會課長	金榮柱
環境保護課長	金敏洙
家庭福祉課長	朴靜子
產業課長	金時漢
地域經濟課長	姜慶錫
畜產課長	鄭義秀
山林課長	李基椿
建設課長	洪基杓
都市課長	權純喆
民防衛課長	金昌吉
保健事業課長	孫東欽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李京植
專門委員	辛教善
議事係長	成京鎬
地方行政主事補	成仁柱
地方行政主事補	邊相得

【 議 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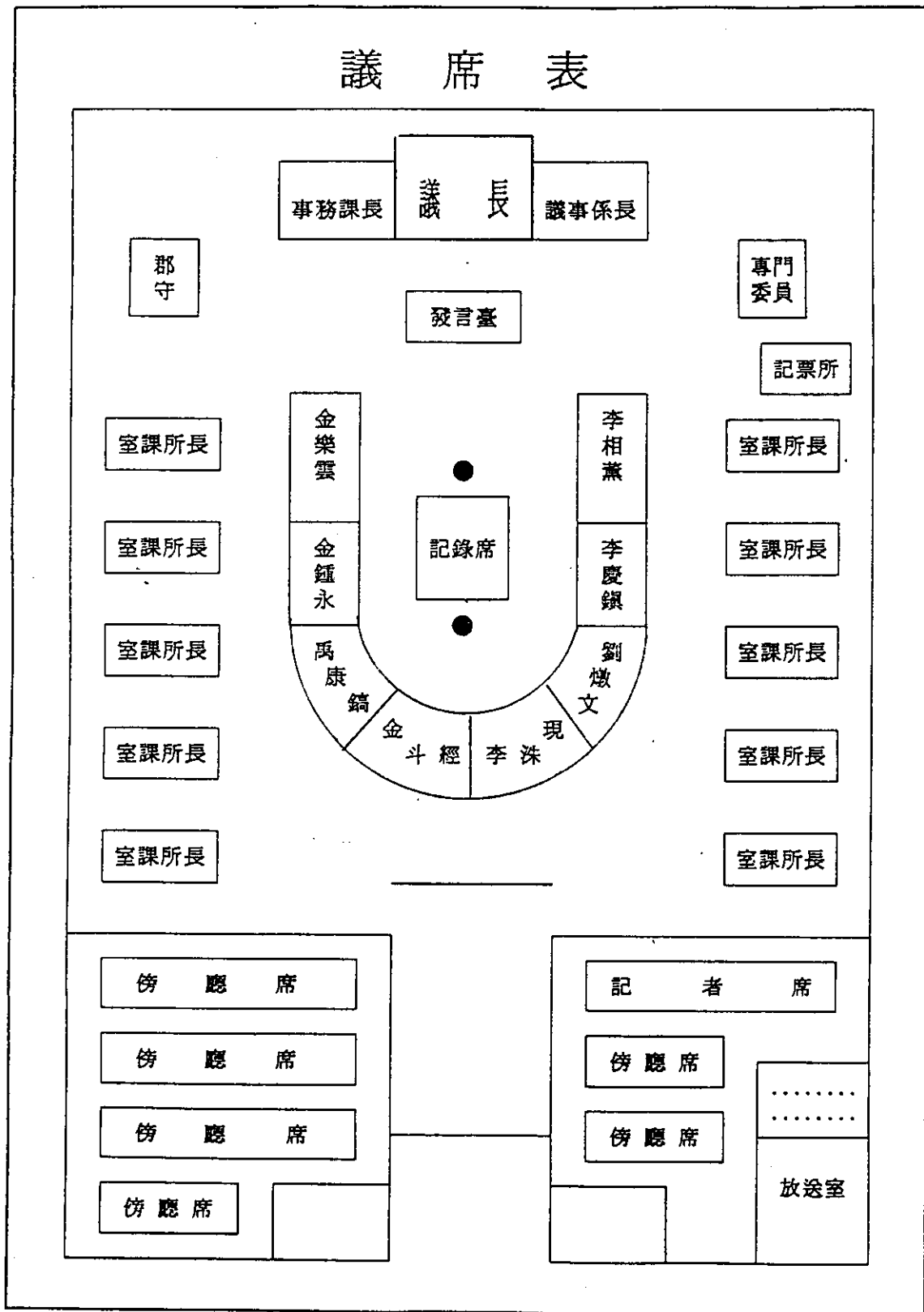
○ 議席表 ( 26面に 실음 )

【 報 告 事 項 】

- 第34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召集  
(地方自治法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依據 召集)
- 文書發送
  -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증改正條例案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증改正條例案 (以上2件 1995年7月19日 - 平昌郡에 移送)
- 條例公布通知
  -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증改正條例案
  -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증改正條例案 (以上2件 1995年7月19日 - 平昌郡 守가 통지)
- 議案接受
  - 平昌郡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用管理條例案 (1995年 7月 26日)
  - 平昌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 條例改正條例案 (1995年 7月 27日)
- 一般文書接受

- 江原道教育委員選出日号公告 및 選出計劃(1995年7月22日 - 江原道議會議長)
- 1995年度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計劃(1995年8月3日 - 劉燉文議員外 3人發議)
- 人事發令
  - 議會事務課長 權赫昇 → 平昌郡
  - 平昌郡 文化公報室長 李京植 → 議會事務課長으로 (1995年 8月 1日)

# 議 席 表



# 의 사 일 정

제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1995년 8월 4일 ~ 8 (5일간)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5. 8.4(금) 11:00	-	○ 개 회 식	
11:20	제1차 본회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 의건</li> <li>2. 제3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건</li> <li>3. 평창군자원의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li> <li>4.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li> <li>5.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 례안</li> <li>6. 강원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li> <li>7.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보고의건</li> <li>8. 휴회의건</li> </ol>	
15:00			



일 시	차 수	부 의 안 건	비 고
'95.8.5 (토) 09:00	휴 회	○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95.8.6 (일)		○ 일 요 일	
'95.8.7 (월) 09:00		○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95.8.8 (화) 09:00  15:00	제2차 본회의	○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 평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 조례안  ○ 1995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견	

# 檢 討 報 告

1.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회조례안
3.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專 門 委 員 辛 教 善

평창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부응하고 제조·유통단계에서 부터 관련업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정비

2. 주요골자

- 식품접객업소 및 모든 집단급식소를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로 확대
- 숙박업소의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 판매업소 추가
- 도시락 제조업체 추가
-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가정용품 도소매업의 17개 업종에 대하여 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하여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부과를 상향조정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상위법 저촉등의 사항은 없음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구 성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산하 과장 11명이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15인이상 20인이하로 두도록 되어 있음.
- 나. 기 능 :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사항, 재원조달,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사항등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초대 평창군의회에 제출되어 위원구성 문제로 계류중 자동폐기된 조례임.
- 체계 및 자구, 상위법 저촉등 별다른 하자가 없음.
-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이며 법령의 위임된 범위에서 위배되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재량행위이므로 위원구성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

### 1. 제안이유

-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특별회계로 운영관리 하고 있는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평창군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폐지 통합 제정

### 2. 주요골자

- 유사특별회계 통합 운영
-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
-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원 가구 선정 및 선정기준 명시
- 대부기간 조정 및 저리이자 신설, 용자지원액 상향 조정
- 자금지원, 회수등 운영관리체계 개편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및기금설치~~ 및 재산의 보유,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상 본조례의 제정근거는 문제가 없으며, 유사한 조례를 폐지 하여 통합 제정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와 자금규모 확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